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09,541,846	33,286,255
일반회계	1,015,711,697	30,471,351
특별회계	93,830,149	2,814,904
공기업특별회계	65,363,399	1,960,902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6,648,971	799,46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8,714,428	1,161,433
기타특별회계	28,466,750	854,0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81,285	20,439
의료보호특별회계	3,214,721	96,442
수질개선특별회계	946,339	28,39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7,795	2,934
주택사업특별회계	525,110	15,753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23,000,000	69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6,022,255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재무활동비,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